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2 발의연월일: 2020. 6. 9.

발 의 자:이병훈·서삼석·김용민

김회재 · 조오섭 · 하영제

문진석 · 김수흥 · 전재수

윤영덕 • 이용선 • 이형석

전해철 · 양향자 · 이규민

인재근 • 이용빈 • 윤준병

김경만 · 최인호 · 김민철

김주영 · 유재갑 의원

(23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을 받고 이를 취업 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학자금대출의 대상에는 대학원생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가구소득분위, 학점, 성적, 석차 등 요건에 따라 대출 자격을 정하고 있어 의도했던 법 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청년실업이 심화되면서 학생들의 취업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그에 따라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점차 심화되고 있음.

이에 학자금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자격 요건과 상관

없이 누구든지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 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 임.

또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재학기간, 휴학기간 및 대학졸업 후 취업 전까지 대출이자를 면 제하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법률 제 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외국인 및 대학원생"을 "대학원생을 포함하며, 외국인"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신청 및 추천"을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 중 "제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대학생인지"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대출시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자의 연 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 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대출시점"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연간소득금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출원리금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 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 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외국인 및 대학원 -----대학원생을 포함하 <u>며, 외국인</u>-----. 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 13. (생략) 5. ~ 13. (현행과 같음) <삭 제> 제9조(자격 요건) ① 교육부장관 이 대학생에 대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하고자 하 는 때에는 가구소득분위 및 다 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성 적 석차, 연령 및 개인신용평점 등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 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 다. ② 교육부장관은 전환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 점, 성적 석차, 연령 및 개인신 용평점 등의 자격요건과 그 밖

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생 략)

- ② 제1항의 대출<u>신청자에 대하</u> <<u>삭 제></u> 여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 재단 이사장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 출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추천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대 학생의 경제적 여건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대출 승인) 교육부장관 또 제14조(대출 승인) 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대 출신청자에 대하여 제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전환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

제16조(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①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 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u>는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하</u> 부담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

제12조(대출 신청 및 추천) ① 제12조(대출 신청) ① (현행과 같 음)

<삭 제>

세	145	드(내	至 ,	군인) –				
						- <u>대</u>	학생	인 7	<u>د]</u> –
	- ,								
제	163	돈(상	환의	무의	일 1	발생	및	면:	제)
	1			<u>대</u>	통i	정 령	으로	. 정	하

<u>따라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u> 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②・③ (생략)

제17조(대출원리금 계산) ① 채무 자가 상환하여야 할 등록금 대 출원리금은 등록금 대출잔액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제 11조에 따른 대출 금리를 등록 금 대출잔액에 매 학기 단리 (單利)로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 2항에 따라 상환이 개시된 경 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 ① (생 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대통령</u> 령으로 정하는 채무자의 연간 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 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소득금 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이하 "상환

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u><단서 삭제></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대출원리금 계산) ①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u> 초과하는 경우</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u>연간소</u>
<u> 득금액</u>

율"이	라	한다)을	곱ㅎ	-여	산	정
한 금	액(여	기하	"의고	구상	환액"	'o]	라
하며,	계식	산한	금호	이	대통	궝	렁
으로	정ㅎ	누는	최소	부담	·의무	상	환
액에	미달	날하는	こる] 우어	는	최:	소
부담	의무/	상환 '	액을	١	말한	다)	을
상환	하여	야 현	난다.	다민	<u>ŀ</u> , 퇴	직:	소
득에	대ㅎ	·여는	- 퇴	직소	득금	·액	에
상환	율을	곱さ	하여	산정	헌한	금	액
은 상	·화히	-여이	는 하기	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